

# 2016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주요내용

## 조례 공포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장의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종종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을 주민자치위원의 자격보다 엄격하게 하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요건을 둬으로써 주민자치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그밖에, 통일적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임기 만료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는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함(안 제7조제8항제6호).

나. ‘명예 주민자치위원장’을 ‘고문’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 단서).

다. “다만, 위원장은 선출 당시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2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5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1. 개정 이유**

구립 봉안시설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여 봉안시설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확대(안 제8조, 제8조의 2)

- 현행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둔 사람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개정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둔 사람(주민) 및 그 가족,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그 가족

나.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추가 확대(안 제13조)

다. 사용료 반환규정 근거 마련(안 제14조)

- 3년 이내인 경우 30퍼센트, 5년 이내인 경우 20퍼센트 반환

라. 운영위탁 가능한 법인 및 위탁 취소 규정 보완(안 제15조, 제17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 **1. 제정 이유**

우울감 경험율이 높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우리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신건강 검진·상담지원사업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정신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정함  
(안 제4조 ~ 안 제6조)
- 다. 정신건강검진비 청구 및 지급 규정 (안 제7조)
- 라.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마. 검진기관의 검진비 허위 또는 부당 청구시 환수조치 및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법체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비함 (안 제3조)

#### 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방안 반영 정비

-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대상 규정 관련 상위법령 위임없이 구 조례에서 임의 규정한 심의사항 조문을 삭제 (안 제2조제4호)
-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 임의 규정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개정 (안 제6조제1항)
-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은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구 조례로 규정한 조문 삭제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 3. 31.부터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임신, 출산 관련 원스톱서비스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우리구의 저출산 문제극복과 원스톱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규정을 정의함. (안 제2조제5호)

나.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로 신청 처리할 경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함  
(안 제5조의2)

# 규 칙 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현행 정원규칙의 직급·직렬별 정원표 상에 있는 규정 외 표기(임기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상계 조정(안 별표)

- 직급·직렬별 정원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정식 직렬명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해당 직렬 정원에 포함
- 일반직공무원

직급	증원	감원
5급	행정 1	행정 또는 임기제(개방형) 1
	의무 5	의무 또는 임기제(의무-의사) 1, 임기제(의무-의사) 4
6급	행정 2	임기제(행정-전문위원) 1, 임기제(행정-입법지원) 1
	보건진료 3	임기제(보건진료-의사) 2, 임기제(보건진료-한의사) 1
7급	행정 1	임기제(행정-평생교육사) 1
	전산 1	임기제(전산) 1
	시설 4	임기제(시설-교통시설) 3, 임기제(시설-도시계획) 1
8급	행정 2	임기제(행정-영사) 2
	공업 1	임기제(공업-전기시설관리) 1
	의료기술 1	임기제(의료기술-치위생사) 1
9급	행정 1	임기제(행정-동영상촬영) 1

- 연구직공무원

증원	감원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관(임기제) 1
학예연구사 5	학예연구사(임기제) 5
기록연구사 1	기록물연구사(임기제) 1

나.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조정(안 별표)

- 영양, 신체활동 분야 전문성 향상 및 주민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직급 상향

증원	감원
보건8급 2	임기제(보건-운동처방사)9급 1, 임기제(보건-영양사)9급 1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해당 과태료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제정 1991.07.10. 조례 제155호)

## 폐지 규칙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1. 폐지이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해당 과태료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존치사유가 없는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 (제정 1991.5.1. 제25호)